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3월 3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설치·운영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관이 직무 수행 시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며,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청이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다른 수사기관들과 함께 수사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제정안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명시된 중대범죄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법」 및 시행령과 같이 6대 범죄를 기준으로 할지, 여기에서 공직자·선거범죄 및 대규모 참사를 제외하고, 내란, 외환, 사이버, 마약 범죄를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를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유사하게 밀접한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의 관계와 같이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할지를 결정하여, 수사권을 기소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인사,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관여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찰청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수사권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우선권을 인정하여 신속한 수사권 결정 및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와 같이 수사권이 영장 신청 시기에 따라 결정되도록 법률상 원칙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투명성과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것인지의 방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수사 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서범수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고, 정부안 제33조의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지명하는 위원이 6인 부분은 수정할 필요

(이성권위원)

정부안 제8조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추천하는 위원 수를 줄일 필요

(양부남위원)

이첩 요청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우선 수사권을 완화할 필요

(정춘생위원)

정부안 제45조의 검사와의 관계 규정은 검사를 우위에 두는 조항으로 삭제될 필요가 있고, 정부안 제2조제1호의 중대범죄 정의에 사이버 범죄를 추가하는 경우 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박수민위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대등·수평한 관계로 설정 시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두 기관의 설립 취지인 수사과 기소의 분리에 충실하기 위해 공소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우 공소청에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필요

(이상식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출신 직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건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건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합·조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서범수위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관련된 조항은 정비되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되기 위한 인사의 독립성과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은 수정되지 않고, 적격심사 조항은 부작용이 예상됨.

(윤건영위원) 법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인 민주적 통제와 중대범죄수사청 독립의 균형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고,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삭제하여 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의 우려를 해소함.

(정춘생위원) 수사대상 중 사이버범죄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정부안 제45조가 삭제되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뜻 깊게 생각함.

(이상식·채현일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인사, 징계 및 적격심사 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외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이달희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분보장, 수사권 독립, 정치적 중립의 보장 필요

(양부남위원)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죄의 범위를 심각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